

개정 2022. 1. 21.

정 관

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

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전문화연구회(이하 “이 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둔다.

제3조(목적) 이 법인은 우리 국민의 정신문화를 선도해온 선비 정신의 계몽 사업과 동양 고전 및 인성의 연수를 통하여 인문 정신을 함양하고,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전수하여 도덕 문화를 창달하며 국민의 인격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등 학술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①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1. 민족 전통문화의 보전·계승 및 발전 사업
2. 동양 고전 및 인문학 연수로 민족의 도덕 문화 창달 기여 사업
3. 동양 고전의 대중화를 위한 고전 번역·출판 및 DB화 사업
4. 한국학 학술 발표회 및 학술지 발행 보급 사업
5. 인성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
6. 제2호 및 제5호 관련 평생 교육 시설의 설치·운영 사업
7. 그 밖의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

②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상벌) ①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(이사장 포함)
3. 감사 1인

제11조(임원의 선임)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상임이사) ①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②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구분 및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 ①이 법인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
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 기능) 이 법인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이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이사회

제24조(이사회 구성)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구분 및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7조(서면결의)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 ①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

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붙임 1”과 같다.

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, 매도, 증여, 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2조(수입금)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, 기부금 모집실적이 있을 때에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2. 1. 21.>

제33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4조(예산편성) 이 법인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5조(결산)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) 이 법인의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7조(임원의 보수)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제38조(사무국)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-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칙

제39조(법인해산) ①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한다.

제40조(정관변경)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규칙제정)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 추진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